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4월 2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5.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가. 제안이유

- 조직의 안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일자리추진단을 부서단위의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진단 신설
 - 일자리추진단 신설(한시기구)
- 팀 이관
 - 일자리정책팀 : 지역경제과 ⇒ 일자리추진단
 - 사회적기업팀 : 지역경제과 ⇒ 일자리추진단
 - 지역일자리사업팀 : 사회복지과 ⇒ 일자리추진단
- 재정국소속에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 추가(안 제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추진단”을 조직의 안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단위의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 재정국 소속으로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신설함.
 - 안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함.
 - 안 제10조 관련 별표에 영등포구 보건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으로 수정함.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과 사회적기업팀 그리고 사회복지과 지역일자리사업팀으로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일자리추진단을 2015년 3월 31일까지 재정국 소속 한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 집중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검토 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4 호
----------	---------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조직의 안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일자리추진단을 부서단위의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단 신설

- 일자리추진단 신설(한시기구)

나. 팀 이관

- 일자리정책팀 : 지역경제과 ⇒ 일자리추진단
- 사회적기업팀 : 지역경제과 ⇒ 일자리추진단
- 지역일자리사업팀 : 사회복지과 ⇒ 일자리추진단

다. 재정국소속에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 추가(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생략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 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둔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일자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재정국) ① <u>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를 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 1. ~ 14. (생략)</p>	<p>제6조(재정국) ① <u>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p>												
<p>[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위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영등포구 보건소</u></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 (당산동3가 385-1)</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보건소</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	<p>[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위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u></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보건소</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											